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자동차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919, 3837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20. 6. 9., 2023. 8. 16.>
 -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 다.
 -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 4의2. "내압용기"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 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 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다. 삭제 < 2019. 8. 27.>
-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5. 24.,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 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0. 20.>
-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의2.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사항
-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 (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개정 2009. 2. 6.>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2. 4.>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②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6., 2023. 8. 16.> [전문개정 2009. 2. 6.]
-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 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4. 1. 9.>
-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의2(자동차제작 • 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 • 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24. 1. 9.>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7., 2017. 10. 24., 2024. 1. 9.>

[본조신설 2012. 12. 18.]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5. 1. 28., 2015. 12. 29.>

-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 는 경우
- 5.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소음・진동관리법」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 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 6. 미완성자동차

[전문개정 2009. 2. 6.]

-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개정 2022. 11. 15., 2024. 2. 20.>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적으로 뗀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20.>
-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 5. 24.>
-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2. 5. 23., 2013. 3. 23., 2020. 6. 9.>
- ⑧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4., 2012. 5. 23., 2024. 2. 20.>
-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 판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15. 1. 6., 2020. 6. 9., 2024. 2. 20.> [전문개정 2009. 2. 6.]
-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1.>
 -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 ·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개정 2015. 8. 11.>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4. 2. 20.>
 -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5.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8. 11., 2021. 4. 13., 2021. 12. 7.>
 -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 우
 -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8. 11.>
 -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2. 20.>
 -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 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4. 2. 20.>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2019. 8. 27.>
-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5. 24.>
-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2020. 6. 9.>
- ① 시·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1. 28.>

-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3. 3. 23, 2015. 1. 6, 2016. 12. 27.>
 -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 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15조 삭제 <1999. 4. 15.>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7조 삭제 <1999. 4. 15.>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2015. 8. 1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전문개정 2009. 2. 6.]
-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24. 2. 20.>
 -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4. 2. 20.>
 -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8. 등록번호판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 한 경우
 -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①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
-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이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 ④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른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24조 삭제 <1999. 4. 15.>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2. 21.>
-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
-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1. 26.>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2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 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 ③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 2호의2에 따라 운행 제한을 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대책을 공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 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신설 2022. 11. 15.> [본조신설 2021. 4. 13.]
-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0. 6. 9.>
 -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4., 2020. 6. 9., 2024. 2. 20.>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 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4. 1. 9.]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개정 2009. 2. 6.>

-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1., 2019. 8. 27.>
 -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 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7. 12. 26.>

② 삭제 < 2011. 5. 24.>

[본조신설 2009. 2. 6.]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2. 13.>
 -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 · 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8.>
 -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8., 2024. 2. 13.>

[본조신설 2012. 12. 18.]

-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 ⑤ 자동차제작·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 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4. 1. 7, 2017. 10. 24, 2020. 2. 4, 2023. 8. 1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튜닝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의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한다. 다만,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8.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10. 24.]

-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2.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 ② 삭제<2022. 6. 1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
 -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품질인증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 2018, 6, 12, 2024, 2, 20.>
 - 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

[본조신설 2014. 1. 7.]

-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품질 인증을 한 경우
 - 3.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①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각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 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 자동차안 전기준등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30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 핵심장치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①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등을 한 때에 (자동차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안 전기준등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으로 갈음할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능시험시설이 제7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확인할 수 있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안전성인증 후에도 자동차안전 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을 하는지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검사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결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작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절차,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3. 3. 23, 2015. 1. 6, 2015. 12. 29, 2017. 1. 17, 2020. 2. 4, 2021. 4. 13, 2023. 9. 14, 2024. 1. 16.>
 - 1.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그 밖에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24., 2013. 3. 23., 2017. 1. 1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5. 1. 6., 2017. 1. 1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2. 4.>
- ⑥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20. 2. 4., 2020. 6. 9., 2024. 2. 13.>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7. 1. 17., 2020. 2. 4., 2023. 9. 14.>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 ⑩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20. 2. 4.>
-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 1. 17., 2020. 2. 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 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2. 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 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4.>
- 1. 에너지소비효율
- 2.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 ⑤ 제14항에 따른 성능 저하의 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3. 9. 14.>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7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3. 8. 16., 2023. 9. 14.>

[제목개정 2017. 1. 17.]

-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7, 1, 17.>
 -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 운전자, 보관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에 응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고 현장 출입,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할 때의 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 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 16., 2015. 1. 6., 2017. 1. 17., 2017. 10. 24., 2021. 4. 13., 2023. 8. 16.>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 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과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12. 29., 2018. 6. 12., 2023. 8. 16., 2024. 2. 20.>
 -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0. 2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12. 26.>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09. 2. 6.]

-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 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7. 1. 17, 2020. 6. 9.>
 -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 5.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 2. 4., 2023. 8. 16., 2023. 9. 14.>
 - 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
 - 3.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
 - 3의2. 제31조제16항에 따른 조사
 -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2020. 2. 4.>

[전문개정 2009. 2. 6.]

-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 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 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분석 하고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8. 1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 16.>
 -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 16.>

[전문개정 2014. 1. 7.]

-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장비개발
 -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2. 삭제 < 2023. 8. 16.>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삭제<2023. 8. 16.>

[본조신설 2014. 1. 7.]

-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은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을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3.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
 - 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7.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7. 12. 26., 2024. 1.

- 1. 자동차의 점검 · 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 2. 폐차하는 경우

9.>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12. 26.]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09. 12. 29.>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 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2. 29.]

-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2. 29.]

-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2. 29.]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신설 2011. 5. 24.>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①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 (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부터 장착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함으로써 내압용기장착검사를 갈음한다.
 -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실시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 기 장착에 대한 튜닝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20. 6. 9.>

- 1. 내압용기 정기검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
- 2. 내압용기 수시검사: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한다.<개정 2013. 3. 23.>
-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로서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 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내압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폭발사고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내압용기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내압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이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 자동차의 사용 정지·제한의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압용기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9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5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내압용기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8.>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제73조
 - 3.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및 제50조

[본조신설 2011. 5. 24.]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개정 2009. 2. 6.>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7. 1. 17., 2023. 3. 28.>
 -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2항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 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5.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 17.>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1, 4, 13.>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행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4. 13.>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 삭제 <1999. 4. 15.>

제39조 삭제 <1999. 4. 15.>

제40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 삭제 <1999. 4. 15.>

제42조 삭제 <1999. 4. 15.>

제5장 자동차의 검사 <개정 2009. 2. 6.>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 3. 23., 2014. 1. 7., 2015. 8. 11.>
-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2021. 4. 1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7., 2021. 4. 13.>
-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 2. 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 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

-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9. 4. 2.>
 -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

-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 또는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보급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7. 10. 24.>
 - ②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7. 10. 24.>
 -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④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 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 4. 13.>
- ⑥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 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7.>
 -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7.>
 - ④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09. 2. 6.]
-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 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 · 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12. 26., 2019. 8. 27., 2024. 1. 3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 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10의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 우
-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 무를 하게 한 경우
- 12의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업무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2015. 1. 6.>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 12. 26.>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 및 제46조의2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12. 26., 2021. 4. 13.>

[본조신설 2009. 2. 6.]

-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1. 4. 13., 2024. 1. 30.>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검사기술 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신설 2015. 1. 6., 2021. 4. 13., 2024. 1. 3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2015. 1. 6., 2024. 1. 30.>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목개정 2024. 1. 30.]

-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검사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24. 1. 3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내용・방법・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4. 1. 30.]

-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 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 3. 23.>
 -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 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신설 2017. 10. 24.>

-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 이 곤란한 자동차
 -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 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 2. 13.>

[본조신설 2017. 10. 24.]

-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 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10.>
-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3. 하자차량소유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 4. 변호사
- ④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 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10.>
-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6. 10.>
- 1.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 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 3. 그 밖에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0, 24.]
-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 ③ 교환·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6. 9.>
 -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24.]
-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교환 환불중재
 - 나. 교환 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신설 2022. 6. 10.>

[본조신설 2017. 10. 24.]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6, 10,, 2024, 2, 20,>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 야를 전공한 사람
-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6.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 한 사람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8.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10.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개정 2022. 6. 10.>
- 1.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신설 2020. 2. 4.>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 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2. 4.>
- ⑧ 그 밖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17. 10. 24.]

-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 ②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 ③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 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 ⑥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4, 2022. 6. 10.>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 급계약 또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개정 2022. 6. 10.>
-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의 결정을 한다.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22. 6. 10.>
-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 제47조의11(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47조의7제 2항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수 있다.
 -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당초의 심의·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심의·의결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종전 제47조의11은 제47조의12로 이동 <2020. 2. 4.>]

- 제47조의12(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

[본조신설 2017. 10. 24.]

[제47조의11에서 이동 <2020. 2. 4.>]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개정 2009. 2. 6.>

-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3. 9. 14.>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4.>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9. 14.>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3. 9. 14.>
- ⑤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이륜자동차 제작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9. 14.]

-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 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3. 9. 14., 2024. 2. 20.> [전문개정 2009. 2. 6.]
-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 1. 이륜자동차의 동일성 확인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 2.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 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진동 검사 분야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의 발급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에 기록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그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⑦ 누구든지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 항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⑥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 ・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 8.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9.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10.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11.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 12.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14.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15.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이륜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륜자동차지 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검사 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2.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
 - 6.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7.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8.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 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 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 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 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 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 "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 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 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 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4. 1. 7., 2015. 8. 11., 2017. 10. 24,, 2020. 2. 4., 2021. 4. 13., 2023. 8. 16., 2023. 9. 14., 2024. 1. 9., 2024. 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17. 10. 24.>

-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8. 11.>
 -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본조신설 2014. 1. 7.]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호・제13호・제14호의2, 제80조제1호・제5호의3,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7. 10. 24., 2020. 2. 4., 2021. 12. 7., 2024. 2. 20.>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8. 11,, 2016. 1, 28.>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 1항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 1. 사업장의 이전
-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 2. 이용약관의 개선
-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 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7., 2015. 8. 11.>
-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12. 30., 2022. 6. 10.>
-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 위
 -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 광고
 -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다.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목개정 2015. 8. 11.]

- **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2022. 11. 15.>
 -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 ㆍ 광고를 하는 행위
 -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6. 10.>

[본조신설 2015. 8. 11.]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 2024. 2. 13.>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 능・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2. 26., 2022. 11. 15.>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
- ④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24., 2013. 3. 23., 2022. 6. 10., 2022. 11. 15.>
-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3. 3. 23., 2014. 1. 7., 2016. 1. 28., 2022. 11. 15., 2024. 2. 20.>
- 1. 삭제 < 2015. 1. 6.>
-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 3.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 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8., 2022. 11. 15., 2024. 1. 30., 2024. 2. 20.>
-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 호판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 5.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삭제<2016. 1. 28.>
-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
-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 ⑨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6. 1. 28, 2022. 11. 15.>
- ⑩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8., 2013. 3. 23., 2022. 11. 15.>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목개정 2022. 11. 15.]

-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 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 2020. 10. 20., 2022. 11. 15.>
 -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4., 2020. 2. 4., 2020. 10. 20., 2023. 3. 28.>
 - 1. 보장 금액
 - 2.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3. 보장 기간

[전문개정 2009, 2, 6,]

-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5로 이동 <2017. 10. 24.>]

-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본조신설 2015. 1. 6.]

[제5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5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2017. 10. 24.>]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
-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58조의5에서 이동 <2017. 10. 24.>]

-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26.>
 -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 도록 할 것
 -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 10, 24.>
 -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다.<신설 2024. 2. 13.>
 - 1.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 28.>
 -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③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삭제 <1999. 4. 15.>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①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내에 경락받은 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인수를 독촉하여야한다.
 - ②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경락받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경매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에 따른 경락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 ④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13.>

[전문개정 2009. 2. 6.]

-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④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전문개정 2009. 2. 6.]
-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 외관 사진
 -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0. 24.]

-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 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3. 12. 30., 2014. 1. 7., 2015. 1. 6., 2015. 8. 11., 2016. 1. 28., 2017. 10. 24., 2018. 12. 31., 2020. 12. 22., 2022. 6. 10., 2022. 11. 15., 2024. 2. 13., 2024. 2. 2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8.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한 경우
 -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 마.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 바.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사.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아.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삭제 < 2012. 12. 18.>
 -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 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바. 삭제 < 2022. 11. 15.>
 -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차.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다.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라.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
 - 마.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부가가치세법」제8조제9항,「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신설 2017. 8. 9.>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 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 업한 경우
- 4.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 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2017. 8. 9., 2017. 10. 24., 2022. 11. 15.>
 [전문개정 2009. 2. 6.]
-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7.>
 -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삭제 < 2011. 5. 24.>
- 2. 삭제 < 2011. 5. 24.>
- 3. 삭제 < 2011. 5. 24.>
-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9.>

- **제68조(연합회)**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신설 2011. 5. 24., 2013. 3. 23., 2024. 1. 30.>
 -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 훈련
 -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 감독
 -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 5. 24.>

[전문개정 2009. 2. 6.]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신설 2011. 5. 24.>

-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①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 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분석 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 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4. 13.>
-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
- 2. 국내 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 분석 업무
-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
- 4.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
-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1. 5. 24.] [제목개정 2021. 4. 13.]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개정
-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 3. 성능시험대행자
-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 5. 「고등교육법」또는「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본조신설 2011. 5. 24.]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11. 5. 24.]

- **제68조의7(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2. 자동차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3. 그 밖에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68조의8(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신설 2015. 1. 6.>

-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한 자동차 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효율적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 2. 주요 자동차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의 조사 및 분석
 -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수요 및 입지 분석
 - 4.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6.]

-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① 시・도지사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 연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 ②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4조·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12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고시 및 실시계획 작성·인가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 ③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보조 또는 융자 및

법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54조, 제59조 및 제71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64조 및 제65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제66조 및 제68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15. 1. 6.]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 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도시개발법」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5. 1. 6.]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사용) 「도시개발법」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2020. 3. 31., 2021. 11. 30.>
 - 1.「건축법」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4.「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5.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 8. 「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법제처 51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 11.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12.「하수도법」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도시개발법」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 17., 2020. 3. 31.>
-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 3.「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물환경보전법」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6. 「전기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7.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 8.「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 9.「하수도법」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5. 1. 6.]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신설 2023. 3. 28.>

-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융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자동차매매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52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23. 3. 28.]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제68조의23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 2.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3.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7. 조합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매매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법제처 5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제 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 4.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 5.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출자금의 감소절차
 -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 다만,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8.]

-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본조신설 2023. 3. 28.]

-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제68조의18에 따른 보증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 2. 제68조의21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 3. 28.]

-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 조사 또는 검사 계획을 미리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8장 보칙 <개정 2009. 2. 6.>

-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법제처 55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1. 1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6.]

-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 · 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 · 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 자동차 자기인증 · 부품자기인증 · 점검 · 정비 · 검사 · 폐차 ·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2024. 3. 19.>
 - 1.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 4.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법제처 56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 6.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 ②「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신설 2024, 3, 19.>

-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24.>
 -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7. 10. 24., 2018. 6. 12., 2022. 11. 15., 2023. 8. 16., 2023. 9. 14., 2024. 1. 30.>
 - 1. 자동차사용자
 -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 4. 자동차제작자등
 - 5. 부품제작자등
 -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
 - 6. 기계·기구제작자등
 - 7. 자동차검사대행자
 - 8. 종합검사대행자
 - 9. 지정정비사업자
 -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 11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 11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 12. 자동차관리사업자
 - 12의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13. 대체부품인증기관
 - 13의2. 튜닝부품인증기관
 -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 16.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 ②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제처 5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 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9. 14.>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2. 26, 2022. 11. 15, 2023. 9. 14.>
 - 1.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

법제처 58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9. 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0. 2. 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5. 12. 29,, 2020. 2. 4,, 2021. 4. 13.>
-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 품을 판매한 자
- 3. 삭제 < 2020. 2. 4.>
- 4. 삭제 < 2020. 2. 4.>
- 5. 제31조의4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 차부품을 판매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0. 2. 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4.>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20. 2. 4., 2020. 3. 24.> [전문개정 2009. 2. 6.]
-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2. 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 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신설 2020. 2. 4.>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 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20, 2, 4,>
 - 1.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2. 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 1. 고의성의 정도
 -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 는 행정처분의 정도

법제처 59 국가법령정보센터

-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 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2. 4.>
- ⑦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15. 12. 29.]
-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5. 12. 29., 2017. 10. 24., 2020. 2. 4., 2022. 11. 15., 2023. 8. 16., 2023. 9. 14.>
 -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 2.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취소
 -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 4. 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 령
 -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5의2.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 5의3.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 6.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 7.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 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

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4. 1. 7, 2015. 1. 6, 2023. 8. 16, 2023. 9. 14, 2024. 2. 20.>

-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을 받는 자
-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 8.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 8의2.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자
- 8의3.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는 자
- 8의4.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를 받는 자
- 9.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자
- 10의2.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하는 자
- 10의3. 제35조의7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신청하는 자
- 10의4.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 11. 제40조에 따라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 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 16.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
- [전문개정 2009. 2. 6.]
-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3. 9. 14.>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④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3. 9. 14.>

법제처 6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 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10. 24., 2020. 4. 7., 2023. 9. 14.>
-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 2.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업무
- 3.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 ⑦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 1. 6., 2017. 10. 24.>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2017. 10. 24.>
- ⑨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10. 2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 5. 24., 2013. 3. 23., 2015. 1. 6.>
-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0. 2. 4.>

-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 2020. 2. 4., 2023. 8. 16., 2023. 9. 14.>
 - 1. 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 2.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 2의2.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 · 제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업무
 - 2의3. 제31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
 - 2의4.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업무
 - 2의5.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업무

법제처 62 국가법령정보센터

2의6.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업무

- 3.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 4. 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 5.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 6.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 7.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 8.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 9. 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12. 26.]

- 제7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자동차에 자기인증 표시를 하도록 한 제30조제4항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자기인증 표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자동차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57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9장 벌칙 <개정 2009. 2. 6.>

-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5. 1. 6., 2015. 12. 29.>
 -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28.>
 -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

[본조신설 2009. 2. 6.]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2. 26., 2022. 6. 10., 2022. 11. 15., 2023. 8. 16., 2023. 9. 14., 2024. 1. 9., 2024. 2. 20.>

법제처 63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 1의3. 제2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제 30조의7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 5의4.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 치등을 판매한 자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 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 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한 자
- 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한 자
- 1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 14.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 선을 한 자
- 14의2.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 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자
- 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 운영한 자
- 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
- 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인가를 받은 자
- 1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를 받은 자
-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9. 2. 6.]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12. 30.,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0. 24., 2017. 12. 26., 2022. 6. 10., 2022. 11. 15., 2023. 9. 14., 2024. 2. 13., 2024. 2. 20.>

법제처 64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 4.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 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 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 검사를 받은 자
-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 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
-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ㆍ 광고를 한 자
-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 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 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 7의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 8. 제5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의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 9.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 2021. 4. 13., 2022. 11. 15., 2023. 8. 16., 2023. 9. 14., 2024. 1. 9., 2024. 2. 20.>
 -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 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 2. 삭제<2024. 2. 20.>
 - 3. 삭제 < 2024. 2. 20.>
 -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법제처 65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 위를 한 자
-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 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 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대체부품 및 튜닝부 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 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조립·수 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 차에 튜닝을 한 자
-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 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20의3.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0의4.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법제처 66 국가법령정보센터

- 20의5.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20의6.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20의7.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자
-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 ㆍ 광고를 한 자
-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
-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상태점 검자
-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 자
-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5. 8. 11., 2020. 6. 9., 2023. 9. 14., 2024. 1. 30., 2024. 2. 13., 2024. 2. 20.>

- 1. 삭제 < 2011. 5. 24.>
-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법제처 67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4.>

-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10. 24., 2017. 12. 26., 2020. 2. 4., 2022. 6. 10., 2023. 3. 28., 2024. 1. 9., 2024. 2. 13.>
- 1. 삭제 < 2020. 2. 4.>
-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 2. 삭제 < 2020. 2. 4.>
- 2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의3.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4의3.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7. 10. 24., 2020. 2.
- 4, 2020. 6. 9., 2021. 4. 13., 2022. 11. 15., 2023. 8. 16., 2023. 9. 14., 2024. 1. 30., 2024. 2. 20.>
-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 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 4. 삭제 < 2024. 2. 13.>
-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법제처 68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 8. 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 11.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7. 10. 24., 2017. 12. 26., 2018. 8. 14., 2019. 8. 27., 2020. 2. 4., 2020. 6. 9., 2021. 4. 13., 2022. 11. 15., 2023. 8. 16., 2023. 9. 14., 2024. 2. 13., 2024. 2. 20.>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삭제 < 2024. 1. 9.>
-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자
- 4. 삭제 < 2017. 10. 24.>
-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8. 삭제 < 2015. 8. 11.>
- 9. 삭제 < 2017. 10. 24.>
-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11. 삭제 < 2017. 10. 24.>
-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 하게 한 자
-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 13의4. 제34조의3(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 1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법제처 69 국가법령정보센터

- 18. 삭제 < 2023. 9. 14.>
- 18의2. 삭제 < 2023. 9. 14.>
-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
-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 22.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23의2.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종사원을 둔 자동차매매업자
-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8. 8. 14., 2020. 2. 4., 2022. 11. 15., 2023. 9. 14., 2024. 1. 9.>
- 1. 삭제 < 2017. 10. 24.>
-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 4. 삭제 < 2012. 12. 18.>
- 5. 삭제 < 2021. 4. 13.>
- 6. 삭제 < 2021. 4. 13.>
- 6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 2018. 8. 14.>
-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 하지 아니한 자
-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7. 10. 24., 2020. 2. 4., 2021. 4. 13.> [전문개정 2009. 2. 6.]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신설 2001. 4. 7.>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2024. 2. 20.>

법제처 7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개정 2014. 1. 7.>
-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 제86조(통고처분) ① 시·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한다. <개정 2015. 12. 29.>
 -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6.]

-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1.>
 -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제20391호,2024. 3. 19.>(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제처 7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